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일시적 2주택 등 64만명 해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예상자 6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거엔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던 임대주택이 등록자동 말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달라진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도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에 따라 1주택자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자 신고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기에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한 차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수 없다면 추징금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하기에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종중(宗中)의 경우에도 특례 신청 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세금 면제… 최승재, 소득세법 개정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 19 손실보상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는 법 해석 측면이며 법조문에 명확히 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나와 있지 않아 자칫 분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최 의원은 "세금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만큼, 법령 상 미비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이인선·권명호·안철수·전주혜·이명수·정우택·김예지·서병수·노용호·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다.

부산국세청, '힌남노' 피해 납세자에 납부연장 및 세무조사 중단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7일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내 힌남노 피해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의 세무행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상실 비율에 따라 내지 않았거나 앞으로 낼 세금에서 공제한다.